



영국



영국 외부감사제도

정보신청기관 : 금융감독위원회 시장감독과

I. 개요

영국의 외부회계감사제도는 우리나라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별도의 법률 없이 1985년 회사법(Companies Act 1985, 이하 'CA 1985'라 한다)의 제5장(제384조부터 제394조A)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영국의 회사법은 19세기 중반에 이미 그 기본적 구조가 완성되었고,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개정작업이 이루어져 왔다. 부분적인 개정이 모이면 이를 통합하여 〇〇년 회사법이라는 명칭으로 부른다. 현재는 1985년 회사법이 회사법규정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그 이후의 중요한 개정작업으로는 1989년 회사법(Company Act 1989)과 2004년 회사법(감사, 조사, 공동체기업) (Companies (Audit, Investigation and Community Enterprise) Act 2004) 등이 있다. 1989년 회사법에 의해 감사의 자격, 감독기관의 승인, 승인기구의 의무, 벌칙 등에 관련한 일부 조항이 수정·대체되었으며, 2004년 회사법에서는 감사 승인기구, 감사와 관련한 국무부 장관 권한의 위임, 감사의 자격, 감사에 제공하는 서비스 등에 관한 규정이 추가되거나 개정되었다. 한편 영국 회사법은 1998년부터 계속된 전면적 개정 작업을 통해, 기존의 회

사법 관련규정을 통폐합하고 EU 회사지침(EU Company Law Directives)을 새롭게 반영한 2006년 회사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2008년 10월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아래에서는 현행 회계감사의 근간을 이루는 1985년 회사법을 중심으로 영국 회계감사제도를 개관하도록 하겠다.

II. 회사법상의 외부감사의 주요 내용

1. 감사의 임명과 책임명

① 일반규정

1985년 회사법(CA 1985)의 제384조(1)과 제388A조(1)에 따르면, 모든 회사는 동법 제5장 11절(제384조에서 제394A조)의 규정과 일치하도록 회계감사를 지명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소규모 회사¹⁾(very small private company)나 휴면회사(dormant company)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동 규정에 의해 감사로 지명된 사람을 '회사 감사' (company auditor)라고 부른다 (CA 1989, 제24조(2)).

② 공개회사

공개회사(public company)의 첫 번째 감사는

이사들이나 이사가 부재할 때는 총회에서 지명될 수 있다(CA 1985, 제385조(1), (3), (4)). 그 후에 공개회사는 각 총회마다 감사를 지명하여 다음 총회 때까지 재직하게 해야 한다(CA 1985, 제385조(1), (2)). 특별통지(Special notice)에 의해 퇴직한 감사와 다른 사람을 감사로 지명할 수 있다(CA 1985, 제391A조(1)). 총회가 개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지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무부장관(the Secretary of State)에게 1주일 내로 보고하여야 하고, 장관은 빈자리를 채울 감사를 지명할 수 있다(CA 1985, 제387조).

③ 사회사(private company)

사회사는 일반적으로 공개회사의 경우를 따르지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이다.

- 감사를 매년 지명하지 않기로 결의한 경우
사회사의 구성원들은 제386조에 근거한 결의를 통해 매년 감사를 지명할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CA 1985, 제384조(4)와 제386조). 즉, 결의 당시의 회사의 감사이었던 사람을 회사의 감사로 재임명할 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다. 결의는 회사법에 의해 익명투표로 이루어져야 한다(CA 1985, 제379A조). 그러한 결의가 집행되면, 회사의 감사는 각각의 계속되는 회계연도에 재임명된 것으로 간주된다(CA 1985, 제386조(2)). 그러한 임명은 종료되는 것은 정해진 절차(CA 1985, 제393조), 또는 이사가 소규모 사회사나 휴면회사에 적용되는 감사요구로부터 면제받는 경우에 가능하다.

- 회사 총회 전에 회계보고서(accounts) 작성을 면제받기로 결의한 경우(CA 1985, 제384조(2), 제385조(1), 제385A조)

1985년 회사법 제252조에 의해 회계(accounts)를 면제받기로 결의한 사회사는 매년 감사를 임명하지 않도록 결의하지 않는 한, 1985년 회사법 제385A조에 따라 감사를 임명해야 한다. 1985년 회사법 제385A조는 구성원들에게 회계의 사본을 회람하고 28일 내에 총회에서 연례 임명을 할 것을 요구한다.

-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소규모 회사이거나 휴면회사인 경우

회사가 소규모 회사이거나 휴면회사이기 때문에 회사법(1985) Part VII에 따라 감사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감사를 지명할 의무로부터도 면제받는다(CA 1985, 제388A조(1)). 1985년 회사법 제388조의 (2)부터 (5)에는 면제가 종료되었을 때, 그러한 회사의 감사의 임명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2. 회사 감사의 자격

① 어떤 자가 회사 감사로 임명될 자격을 갖기 위해서, 그는 1989년 회사법 제25조 (1)에 의해 승인된 감독기관(recognized supervisory body)의 구성원이어야 하고, 그 기관의 규칙에 의해 임명될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감독기관은 1989년 회사법 schedule 11에 따라 승인을 받는다. 현재 승인된 기구는 '잉글랜드/웨일즈 공인 회



1) 여기서 '사회사' (private company)란 공기업에 대칭되는 개념이 아니라, '공개회사' (public company)와 대칭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사회사를 '폐쇄회사' 라고 번역하기도 한다. 사회사는 주식의 양도가 제한되고, 주주의 수가 50인 이하여야 하며, 주식사채의 모집이 금지되어 있으며, 공개회사에 비해, 설립절차와 기관구성 등이 간단하다. 사회사는 한국 상법상의 유한회사와 유사하며, 중소기업을 목적으로 하는 소규모의 사업체에 적합한 형태이며, 영국의 주식회사 대부분은 사회사이다.

계사회' (the Institution of Chartered Accountants in England and Wales), '스코틀랜드 공인 회계사회' (the Institution of Chartered Accountants of Scotland), '공인회계사협회' (the Association of Chartered Certified Accountants), '공인 공공 회계사협회' (the Association of Authorised Public Accountants), '아일랜드 공인회계사회' (the Institution of Chartered Accountant Ireland) 등이다. 현재 국무부 장관(the Secretary of State)이 승인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이러한 기능은 - 재정 보고 평의회(the Financial Reporting Council)의 실행기구 중 하나인 - '회계감독위원회' (the Professional Oversight Board for Accountancy)에 위임되어 있다.

② 1989년 회사법 schedule 11의 4에 의해 승인된 감독기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그 회사의 감사로 선임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감사가 개인인 경우, 그 사람이 적절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는 경우
- 감사가 '회사' (firm)인 경우, 적절한 자격을 가진 회사를 대신하여 감사에 책임있는 사람이 일하고 있지 않고, 그 회사가 자격 있는 사람에 의해 통제되고 있지 않는 경우

③ 1989년 회사법 제27조의 (1)에 의해 a) 회사의 임원(officer) 또는 피고용자거나, b) 그러한 사람의 파트너 또는 고용인이거나, 그러한 사람의 파트너와 파트너 관계이거나, 또는 a)와 b)로 인해 회사의 관련된 일의 감사로 임명될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로 임명될 수 없다. 여기서 관련된 일이란 회사의 근원이 되는(parent) 일이나 보조적인(subsidiary) 일, 또는 회사의 어떤 근원적인 일의 보조적인 일을 말한다.

④ 자격이 없는 자가 감사로 일하는 것은 불법이다(CA 1989, 제28조(3)). 임명자격이 없음을

몰랐고, 그렇게 믿을만한 근거가 없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방어를 할 수는 있다(CA 1989, 제28조(5)). 1989년 회사법 제29조는 회사의 감사가 임명자격을 결한 자에 의해 수행된 경우에, 자격 있는 사람이 다시 그 감사를 검토하거나 재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회사에 지시할 수 있다.

3. 회사 감사의 해임, 사임, 교체

회사는 보통 결의(ordinary resolution)에 의해 회사와 감사 사이의 어떠한 계약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해임할 수 있다(CA 1985, 제391조(1)). 특별 통지(special notice)는 그러한 결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CA 1985, 제391A조(1)). 그리고 회사는 해고를 하려고 하는 감사에게 통지를 해야 한다(CA 1985, 제391A조(2)).

어떠한 이유에서 감사직을 그만두려고 하는 감사는 회사가 등록된 사무소에 회사직을 그만두는 것과 관련된 어떠한 상황에 대한 진술을 공탁해야 하며, 그것은 회사의 구성원이나 채권자에게 알려져야 한다(CA 1985, 제394조(1)). 회사의 감사는 회사가 등록된 사무소에 문서로 그 통지를 공탁함으로써 사임할 수 있다(CA 1985, 제392조(1)). 회사 감사로 선임되었으나 무자격자인 자는 사임하여야 하며, 즉시 회사에게 무자격으로 사임함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CA 1989, 제28조(2)). 회사의 감사 사무소에 갑자기 공석이 생겼을 때는 남은 감사나 계속 일하는 감사가 공식인 기간 동안 일할 수 있다(CA 1985, 제388조(2)). 이사 또는 회사는 총회에서 공석을 채우기 위해 감사를 임명할 수 있다(CA 1985, 제388조(1)).

4. 감사의 보수

회사에 의해 임명되는 회사 감사의 보수는 총회에서 또는 총회에서 회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회사에 의해 확정되어야 한다(CA 1985, 제390A조(1)). 이사에 의해 임명되는 감사의 보수는 이사에 의해 확정되어야 한다(CA 1985, 제390A조(1)). 국무부 장관이 감사를 임명한 경우에는, 국무부 장관이 감사의 보수를 정한다(CA 1985, 제390A조(2)). 회사 감사의 보수의 총액은 회사의 연간 회계에 기재되어야 하며(CA 1985, 제390A조(3)), 지출과 이익은 보고되어야 한다(CA 1985, 제390A조(4) and (5)).

5. 회계감사 보고서의 내용

회사 감사의 주요한 기능은 회사의 재정년도의 회계를 보고하는 것이다. 감사의 보고서에는 감사를 한 연간회계와 그 준비에 적용된 재정보고 구성(financial reporting framework)을 확인하는 서론(introduction)을 포함된다(CA 1985, 제235조(1A)(a)). 또한 서론은 감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설명하고, 감사기준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CA 1985, 제235조(1A)(b)). 보고서는 감사의 의견으로 연간회계가 1985년 회사법과 - 그것이 국제회계기준(IAS)에 따른 회계라면 - Regulation (EC) No. 1606/2002, Article 4에 따라 적절하게 준비되었는지(CA 1985, 제235조(1B)), 그리고 회계가 진실하고 공정한 견해를 제공하는지의 여부를 분명하게 진술해야 한다(CA 1985, 제235조(2)).

6. 감사의 조사권한

감사 보고서를 준비하기 위해, 감사는 1985년 회사법 제237조(1)에 의해 충분히 조사하여, 회사가 적절한 회계기록을 유지했는지, 재정년도의 회계와 이사의 보수 보고서(remuneration report)가 그 회계 기록과 합치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CA 1985, 제237조(2)).

회사의 감사는 회사의 장부, 회계, 증빙서류 등에 대해 그것들이 어떤 행태로 보관되어 있건간에, 그것들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CA 1985, 제389A조(1)(a)). 회사의 감사는 1985년 회사법 제389A조(2)에 기재되어 있는 자들(회사의 임원, 피고용인, 회사의 서류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자 등)이 감사의 의무를 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정보나 설명을 제공할 것을 요구할 권한을 갖는다(CA 1985, 제389A조(1)(b)).

그러한 요구에 지체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그것은 -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 위법이다(CA 1985, 제389B조(2)(3)). 알면서 혹은 부주의로 잘못된 또는 허위의 정보나 서명을 제공했을 경우 최고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CA 1985, 제389B조(1) and schedule 24).

7. 회사의 과실에 대한 감사의 책임

회사의 감사는 독립된 법인격으로서의 회사와 계약 하에 업무를 수행한다. 회사의 감사는 회사에 대해 - 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 계약상의 주의 의무(implied contractual duty of care)를 진다(Equitable Life Assurance Society v. Ernst and Young [2003] EWCA Civ 1114, [2003] 2 BCLC 603, at [108]). 감사가 감사업무에서 합리적으로 능력있고 주의깊고 신중한 감사가 사용하는 기술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은 감사의 의무인 것이다(Re Kingston Cotton Mill Co. (No.2) [1896] 2 Ch 279 at pp.288-289). 또한 감사는 부주의한 허위보고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홍 성 수

(영국 주재 외국법제조사원)